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2024. 8.



고용노동부

Contents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7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시행령 제78조) ··· 9
2.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 등(시행령 별표 24, 25) ····· 12
3.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9) ····· 16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 수 기준 명확화(시행령 별표 29) ··· 21
5. 특수 및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현실화(시행령 별표 30) ····· 24

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9

1.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시행규칙 제86조) ····· 31
2.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시행규칙 제126조 및 별표 5) ····· 39
3.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규정 합리화
 (시행규칙 제109조 및 제125조) ····· 43
4.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대상 추가(시행규칙 제200조) ····· 47
5.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시행규칙 제203조) ····· 51
6. 특수 및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현실화
 (시행규칙 제209조 및 제211조) ····· 55
7.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 개선(시행규칙 별표 24) ····· 60
8. 제조등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 시 항목 변경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서식) ····· 64

9.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시행규칙 별지 제91호 서식) … 70
10.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시행규칙 별표 2) …… 74
11.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90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 77

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85

1.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합리화 (안전보건규칙 제24조) …… 87
2.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672조, 제673조) …… 91
3.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전보건규칙 제42조) …… 95
4.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전보건규칙 제55조) …· 99
5. 통나무 비계 기준 정비(안전보건규칙 제71조) …… 102
6.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안전보건규칙 제87조) …… 105
7.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안전보건규칙 제92조) …· 109
8. 레버풀러 등 사용 관련 조문 정비(안전보건규칙 제96조) …… 111
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위치 위탈 시 조치 명확화 (안전보건규칙 제99조) …… 114
10. 식품가공용 볼 리프트 방호조치 기준 마련 (안전보건규칙 제130조) 116
11.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안전보건규칙 제147조) …… 119
12. 구내운반차 안전장치 강화(안전보건규칙 제184조) …… 121
14.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전보건규칙 제261조) …… 123

Contents

15.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 소화설비 명확화
(안전보건규칙 제290조·제295조) ····· 128

16.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조치기준 삭제
(안전보건규칙 제477조~제485조) ····· 132

17.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예방적 기능 복원(안전보건규칙 제517조) ····· 134

18.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
(안전보건규칙 제519조, 제520조) ····· 138

19.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
(안전보건규칙 제547조) ····· 140

20. 병명 현행화(인간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안전보건규칙 제592조) ····· 144

21.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목적 명확화 및 측정자격자 확대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 148

23.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 합리화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 153

24. 조문제목 구체화(작업조건 → 작업과 휴식시간의 배분)
(안전보건규칙 제664조) ····· 157

25.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이행규정 혼선 해소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제665조, 제666조) ····· 15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6.25.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3천명당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령 제419호, 2024.6.28. 공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 (안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하여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 (안 제126조, 별표 5 및 별표 16)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포함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의 주기를 규정함.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
(안 제203조)

종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
(안 제211조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추가함.

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제417호, 2024.6.28. 공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 · 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제조 · 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해 제조 · 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 기준을 삭제 · 정비하는 등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 (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
(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 · 파쇄기 · 마쇄기 · 미분기 · 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
(안 제130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
(안 제261조제3항)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현행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년마다 또는 3년마다로 그 점검 주기를 연장함.

사.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석면의 제조 · 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 · 정비
(안 제477조부터 안 제485조까지 삭제)

현재 제조 · 사용 등이 금지 되는 석면에 대해 제조 · 사용하는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을 삭제 · 정비함.

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
(안 제619조의2)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 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한을 폐지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 ·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

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시행령 제78조)

근거 법령

◇ **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개정 배경

■ '22.10월 SPL의 식품가공기계(혼합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지난 5년간('17년~'22.9월) 유사 **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세부 원인 등을 분석하여 **관리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 **위험기계의 회전 부위로 인한 사고사망자 111명** 중 **혼합기, 파쇄·분쇄기** ('이하 혼합기 등') **사고사망자**는 **23.4%(26명) 차지**

〈혼합기〉		〈파쇄기 · 분쇄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

◉ 이러한 사고는 **덮개나 덮개 연동 시스템 등의 방호조치 미비로 발생**하고 있으나, 혼합기 등은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 이에, **혼합기 등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기계 **사용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확인·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

* 안전검사 대상 혼합기 등의 구체적인 규격, 형식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안전검사대상기계등(13종) >	< 안전검사대상기계등(15종) >
1. 프레스	1. 프레스
2. 전단기	2. 전단기
3. 크레인	3. 크레인
4. 리프트	4. 리프트
5. 압력용기	5. 압력용기
6. 곤돌라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	7. 국소 배기장치
8. 원심기	8. 원심기
9. 롤러기	9. 롤러기
10. 사출성형기	10. 사출성형기
11. 고소작업대,	11. 고소작업대,
12. 컨베이어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3. 산업용 로봇
<신 설>	14. 혼합기
<신 설>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6.6.26.)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혼합기
〈신 설〉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2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 등 (시행령 별표 24, 25)

근거 법령

◇ **법 제96조(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정 배경

■ 안전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검사 물량**은 **연 평균 약 38만대**로,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약 3만대씩 증가** 중이며, 아울러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 파쇄·분쇄기 등도 추가**될 예정(약 8만8천대 추정)

◉ 이러한 **검사물량 확대로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현행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시행규칙 별표 24)

** (안전검사기관 의견)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안전검사기관에서 종사한 사람만이 해당되므로 소위 '인력 빼가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

◉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예정인 **혼합기, 파쇄기 등**을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검사대상 기계 항목에 추가**

2 개정 내용

-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혼합기, 파쇄기 등**을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할 수 있는 기계 항목에** 추가
- 법정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에 산안법상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 포함**

 * 산안법상 안전관리·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에서도 기계에 관한 점검을 수행하므로 해당 경력을 포함

3 시행 시기

- **(시행일)** [별표 24] 비고 개정 규정은 2024. 7. 1.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79조제2호 관련)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현 행	개 정 안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생 략)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종합안전검사	

나.~다. (생 략)

2. 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생 략)		
2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생 략)	
3	(생 략)		
4			
5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현행과 같음)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종합안전검사	

나.~다. (현행과 같음)

2. 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현행과 같음)		
2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분쇄기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5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81조 관련)</td><td>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81조 관련)</td></tr>
<tr><td>
<table>
<tr><th>번호</th><th>구분</th><th>인력기준</th><th>시설·장비기준</th></tr>
<tr><td>1</td><td colspan="3" rowspan="2">(생 략)</td></tr>
<tr><td>2</td></tr>
<tr><td>3</td><td>기계분야
(제7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으로 한정한다)</td><td colspan="2">(생 략)</td></tr>
<tr><td>4</td><td colspan="3" rowspan="2">(생 략)</td></tr>
<tr><td>5</td></tr>
</table>
</td><td>
<table>
<tr><th>번호</th><th>구분</th><th>인력기준</th><th>시설·장비기준</th></tr>
<tr><td>1</td><td colspan="3" rowspan="2">(현행과 같음)</td></tr>
<tr><td>2</td></tr>
<tr><td>3</td><td>기계분야
(제7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으로 한정한다)</td><td colspan="2">(현행과 같음)</td></tr>
<tr><td>4</td><td colspan="3" rowspan="2">(현행과 같음)</td></tr>
<tr><td>5</td></tr>
</table>
</td></tr>
</table>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3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9)

1 개정 배경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업종 분류 재정비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기준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르고 있음

◉ 현재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24.7.1.부터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될 예정으로, 변경된 산업분류내용*을 반영하여 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할 필요

* ▲현재 "정보서비스업(중분류)"에 해당하는 일부 산업활동(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이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소분류)"로 세분화되어,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으로 분류가 변경

〈 표준산업분류 개정전·후 비교 〉

(기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분류명칭**	**코드**	**분류명칭**
63(중분류)	**정보서비스업**	63(중분류)	**정보서비스업**
639(소분류)	기타 정보서비스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포함**	639(소분류)	기타 정보서비스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제외**
60(중분류)	**방송업**	60(중분류)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01(소분류)	라디오 방송업	601(소분류)	라디오 방송업
602(소분류)	텔레비전 방송업	602(소분류)	텔레비전 방송업
	<신 설>	**603**(소분류)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2 개정 내용

■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의 운영실태, 인력구성 및 유해 위험요인 등이 ‘정보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 법 시행령 별표의 ‘정보서비스업’에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추가 · 신설하고, ‘방송업’을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으로 개정하여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산업분류가 변경된 업종의 법 적용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

① 현행 별표상 **‘정보서비스업’이 있는 경우**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제11차 소분류 기준)’을 신설·추가

② **‘방송업’**에도 같은 기준(제11차 소분류)을 적용하여,
‘라디오 방송업’과 ‘텔레비전 방송업’으로 변경

〈 산안법 적용 범위 비교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기준	정보서비스업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방송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안전보건교육 (영 별표1)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영 별표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영 별표3)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영 별표5)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영 별표9)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별표 1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신 설> 다. 정보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 방송업	<별표 1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라. 정보서비스업 3. (좌동) 사.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법
<별표 2 '사업의 종류> <신 설> 27. 정보서비스업	<별표 2 '사업의 종류> 26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27. 정보서비스업
<별표 3 '사업의 종류> 35. 방송업	<안전검사대상기계등(15종)> 35.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5 '사업의 종류> 31. 방송업	<별표 5 '사업의 종류> 31.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9 '사업의 종류> <신 설> 14. 정보서비스업	<별표 9 '사업의 종류> 13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14. 정보서비스업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4. 7. 1.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제2조제1항 관련)
<table><tr><th>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th></tr><tr><td>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 나. (생 략)
다. 정보서비스업

라. ~ 자. (생 략)</td></tr><tr><td>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 바. (생 략)
사. 방송업
아. ~ 하. (생 략)</td></tr></table></td><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제2조제1항 관련)
<table><tr><th>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th></tr><tr><td>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 차. (현행과 같음)</td></tr><tr><td>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아. ~ 하. (현행과 같음)</td></tr></table></td></tr>
<tr><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14조제1항 관련)
<table><tr><th>사업의 종류</th></tr><tr><td>23. ~ 26. (생 략)
〈신 설〉
27. ~ 33. (생 략)</td></tr><tr><td>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td></tr></table></td><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14조제1항 관련)
<table><tr><th>사업의 종류</th></tr><tr><td>23. ~ 26. (현행과 같음)
26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27. ~ 33. (현행과 같음)</td></tr><tr><td>34.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table>
<tr><th>사업의 종류</th></tr>
<tr><td>1. ~ 34. (생 략)
35. 방송업
36. ~ 48. (생 략)</td></tr>
</table>
</td><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table>
<tr><th>사업의 종류</th></tr>
<tr><td>1. ~ 34. (현행과 같음)
35.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36. ~ 48. (현행과 같음)</td></tr>
</table>
</td></tr>
<tr><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20조제1항 관련)

<table>
<tr><th>사업의 종류</th></tr>
<tr><td>24. ~ 30. (생 략)
31. 방송업
32. ~ 43 (생 략)</td></tr>
</table>
</td><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20조제1항 관련)

<table>
<tr><th>사업의 종류</th></tr>
<tr><td>24. ~ 30. (현행과 같음)
31.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32. ~ 43. (현행과 같음)</td></tr>
</table>
</td></tr>
<tr><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34조 관련)

<table>
<tr><th>사업의 종류</th></tr>
<tr><td>10. ~ 13. (생 략)
〈신 설〉
14. ~ 19. (생 략)</td></tr>
<tr><td>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td></tr>
</table>
</td><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34조 관련)

<table>
<tr><th>사업의 종류</th></tr>
<tr><td>10.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14. ~ 19. (현행과 같음)</td></tr>
<tr><td>21.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td></tr>
</table>
</td></tr>
</table>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과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정은경 사무관 김영남 사무관 윤현욱 사무관 김건우	연락처	044-202-8808 044-202-8853 044-202-8873 044-202-8820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 수 기준 명확화 (시행령 별표 29)

근거 법령

◇ **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개정 배경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 수를 '반기'를 기준으로 행정해석(붙임1)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 문의 다수 발생

2 개정 내용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 기준 측정대상 사업장 수를 '반기'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

현 행	개 정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 수를 '반기' 기준이나,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 수를 '반기' 기준으로 명시

■ **(시행일)** 2024. 7. 1.부터 시행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1.~2. (생 략) 비고 1.~3. (현행과 같음) 4. 〈신 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1.~2. (현행과 같음) 비고 1.~3. (현행과 같음) 4. 제1호가목1)·2)·3) 및 4)의 측정대상 사업장 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한다.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연락처	044-202-8871

붙임 1 측정대상 사업장 수 관련 질의회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수신 송윤주 귀하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지정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 개수의 제한 단위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별표12 2에 의거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480개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서 측정대상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측정기관이 측정대상 사업장(즉, 측정 계약을 맺어 측정을 위탁받은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반기(상반기, 하반기) 단위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지정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 개수의 제한 단위는 6개월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5 특수 및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현실화 (시행령 별표 30)

근거 법령

◇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하 생략) 1명이상. 다만, 1년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명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1 개정 배경

-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질 관리 목적으로** 해당 **직업환경전문의 1인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 규정상 배치전건강진단*의 경우 연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 **배치전건강진단**을 과도하게 실시하더라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연인원 제한에 따른 질 관리 실효성이 결여됨**

* **배치전건강진단**이란 근로자를 유해인자 업무에 배치하기 전 해당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직업환경전문의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특검이랑 동일)

■ 과거 구법(19.12.24.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전)의 경우 건강진단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 조항(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연인원에 대한 **행정해석을 건강진단 종류 구분없이 계산**토록 하였으나,

◉ **개정 이후**에는 법에서 이미 건강진단을 종류별로 조항을 구분함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연인원 계산은 **특수건강진단만으로 제한하여 해석**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특수건강진단 ② 배치전건강진단 ③ 수시건강진단,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이에,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경우 대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배치전건강진단을 인원제한 없이 과도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수단이 없어, 잦은 민원이 발생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도 이러한 건강진단 시장의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건강진단 질관리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

2 개정 내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을 포괄하여 집계하되**

◉ 현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인력수급 현황*과 특수건강진단기관 운영현황, 실적 등 현실성**을 고려할 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자격 합격 현황: 37명('21년) → 35명('22년) → 33명('23년)

** ❶ 배치전건강진단은 보고의무가 없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연구결과(16년, 19년) 등에 따르면 대략 특수건강진단의 약 16% ~ 21% 추정

❷ 최근 2년간 정부비용지원사업(배치전・특수건강진단)에서 배치전건강진단은 비율은 28.9%('23년)

❸ 특수건강진단기관 약 255개소(23.10. 기준)에서 연간 특수건강진단을 2,281,990명('21년) 실시하고 있음

〈 의사 1인당 일반건강검진기관 수검 제한 Vs 특수건강진단기관 수검 제한 〉

일반건강검진(보건복지부)	특수・배치전건강진단(고용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출장기준 100명/일(원내기준 25명/일)	※ 252일/년 = 월평균 근무일(21일)*12월 ▸(現)특수건강진단 수검인원제한: 1만명/연 (일일환산: 10,000명/252일 = 약 40명/일) ▸(改)특수,배치전 수검자 13,000명(특수: 1만명) (일일환산: 13,000명/252일 = 약 52명/일)
(1일 진료시간 적용 예) 수검자 1명 5분 X 100명 =500분 (8시간20분)	(1일 진료시간 적용 예) 수검자 1명 5분 X 52명 =260분 (4시간20분)

◉ 별도 추가 비용발생(의사 채용)없이도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사 1명당 연간 실시 인원제한 기준을 1만명에서 13천명**으로 **확대**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보고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現, 특수,수시, 임시 건강진단)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의사 1명당 연간 실시인원 수 제한은 특수건강진단 실시인원 1만명 미만	1)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2)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5. 1. 1. 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명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 1) 또는 2) 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추가 인원 수가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를 추가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인원 수를 추가한다.

현 행	개 정 안
	1)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2)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 3천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 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진영훈	연락처	044-202-8872

I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시행규칙 제86조)

근거 법령

◇ **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개정 배경

■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공사 단계별(계획-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나,

-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발주자 작성**, 설계자에게 전달)
-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작성**, 건설공사발주자의 작성 확인 및 시공사 전달)
-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사 작성**, 건설공사발주자의 작성 및 이행 확인)

◉ 각 안전보건대장별로 **작성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곤란**하거나, 다른 제도와 **중복하여 작성**해야 하는 항목도 존재

■ 이에, 각 건설공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기본안전보건대장 〉

1. 개정이유

■ **사업개요**(공사규모, 예산 및 기간 등)와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현행 제86조제1항),

◉ **공사금액, 공사기간**은 발주자가 **설계 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고*,**

* 공사금액·기간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산정(「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 제45조의2)

◉ **설계·시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발주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 부여**

2. 개정내용

■ **공사예산 및 기간** 등 발주자가 **설계 전 시점에서 작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삭제**(안 제86조제1항제1호)

■ ①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내용**과 ②「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주요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화**(안 제86조제1항제1호, 제3호)

* 가설구조물(비계 등), 건설기계·장비(굴착기, 이동식크레인) 등 고용노동부 고시(「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제1호)에서 구체화

** 적격수급인 선정(법 제61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같은 법 제72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같은 법 제68조), 공사기간 단축 금지(같은 법 제69조) 등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3. 건설공사에 설치·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신 설〉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설계안전보건대장〉

1. 개정이유

■ **설계자는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예상**하고 **감소대책**을 **마련**해야 하나(현행 제86조제2항),

*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착공 전** 시점에는 작업 절차, 방법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설계자**가 **모든 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기 곤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등 **시공 시 안전관리**를 위한 **다른 제도***의 **이행계획을 작성**하나(현행 제86조제2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안전보건조정자(같은 법 제68조),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같은 법 제73조)

◉ 단순히 다른 제도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감소방안 마련과 관련이 낮고,

◉ 특히, 구체적인 시공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복수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시기·내용 조정 및 안전조치 마련 등 수행

2. 개정내용

■ 시공 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 감소방안** 마련 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삭제**(안 제86조제2항제2호)

(참고) 지반 상태(지내력, 경사 등)와 구조물별 구조적 한계(하중 및 침하량 허용치 등) 등 설계조건에 따른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을 작성하도록 안전보건대장 서식 개정 병행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대상에서 **삭제**(안 제86조제2항 제3호, 제4호, 제6호)
-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인용 조항 수정**(안 제86조제2항 단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는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내역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의제가 곤란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삭 제〉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삭 제〉

현 행	개 정 안
5. (생 략)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5. (현행과 같음) 〈삭 제〉

〈 공사안전보건대장 〉

1. 개정이유

- **시공사**는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나(현행 제86조제3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항목에서 **위험성평가**를 **제외**하도록 개정 추진 (안 제86조제2항제2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등 **다른 제도**와 **중복**하여 **작성***하는 항목도 존재(현행 제86조제3항 제2호, 제3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공사의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의 현장 비치 의무(법 제72조제3항)

2. 개정내용

- **설계안전보건대장 개정 내용**(안 제86조제2항제2호)을 반영하여 작성항목을 수정(안 제86조제3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등 다른 제도와 **중복**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항목은 **삭제**하고(안 제86조제3항 제2호, 제3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작성항목은 **이행 확인* 결과**와 그에 따른 **시공사**의 **조치내용**을 작성하도록 변경

* 법 제43조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 초기**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계획**을 작성항목에 추가 (안 제86조제3항 제3호)

(참고)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기계·장비의 배치 위치 및 동선 상의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을 작성하도록 안전보건대장 서식 개정 병행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4. 7. 1.부터 시행
-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종호	연락처	044-202-8936

2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규칙 제126조 및 별표 5)

근거 법령

◇ **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개정 배경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안전검사 주기를 규정**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에도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 중
 -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을 받은 경우'** 관련 교육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교육과정 추가**

2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안전검사 주기를 추가***하고, 별표 5의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6. 6. 26. 시행
-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특례)** 2026. 6. 26.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3.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생 략)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 1.·2. (현행과 같음) 3. ----------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현행과 같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 4. (생 략)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 4. (현행과 같음)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table>
<tr><th>설비명</th><th>교육과정</th><th>교육내용</th></tr>
<tr><td>가. ~ 타.
(생 략)</td><td>(생 략)</td><td>(생 략)</td></tr>
<tr><td>〈신 설〉</td><td>〈신 설〉</td><td>〈신 설〉</td></tr>
<tr><td>〈신 설〉</td><td>〈신 설〉</td><td>〈신 설〉</td></tr>
</table>
6. (생 략)
</td><td>
<table>
<tr><th>설비명</th><th>교육과정</th><th>교육내용</th></tr>
<tr><td>가. ~ 타.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파. 혼합기</td><td>성능검사 교육</td><td>○ 관계 법령
○ 혼합기 개론
○ 혼합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td></tr>
<tr><td>하. 파쇄기 또는 분쇄기</td><td>성능검사 교육</td><td>○ 관계 법령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개론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td></tr>
</table>
6. (현행과 같음)
</td></tr>
</table>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3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규정 합리화 (시행규칙 제109조 및 제125조)

근거 법령

◇ **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 제93조(안전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93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신고·검사**를 한 경우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 **타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법률 명칭, 조문 등 반영하여 **현행화 필요**

* 舊「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이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 등

2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25조에서 규정한 **타 법령의 명칭, 조문번호 등 현행화**

현 행	개 정
□ 안전인증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항만법**」 제26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 제조검사, 설치검사, 수시검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안전인증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 ▲「**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 제조검사, 설치검사, 수시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안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항만법**」 제26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 정기검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안전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 정기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4. 7. 1. 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4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대상 추가 (시행규칙 제200조)

근거 법령

◇ **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경우 실시로 인정하고 있음

◉ 반면,**「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경우 **문진사항과 검사항목이 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부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특수건강진단으로 **불인정**

■ 건강진단의 효율성 및 중복 검진, 법령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동물진단용 방사선과 진단용 방사선**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령에 해당 **건강진단을 추가**할 필요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건강진단 비교 〉

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근거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
정의 (제2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기기 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기기 가.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다. 그 밖에 방사선을 발생시켜 동물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3조)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진 사항** 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진 사항** 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사람은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2. 검사 항목** 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2. 검사 항목** 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2 개정 내용

■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하는 법령으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신설>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4. 7. 1. 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진영훈	연락처	044-202-8872

5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 (시행규칙 제203조)

근거 법령

◇ **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정 배경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 실시하도록 규정

◉ 이때, 해당 유해인자 또는 같은 검사항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업무 특성 상 **이직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6개월 간격으로** 과도하게 **반복 실시**해야 하는 사례 발생

*** 사례:** 건설현장에서 2년간 분진에 노출될 경우 건강진단을 총 2회(배치전, 배치후) 실시하게 되나, 같은 기간내 3~4개월 주기로 사업장을 옮긴다면 6개월 간격으로 배치전 건강진단만 총 4회 실시하게 됨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를 유해인자별 달리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배치전건강진단의 인정 유효기간도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

☞ 유해인자(총 181개)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정기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6개월(7개), 12개월(171개), 24개월(3개)로 규정

2 개정 내용

■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면제기준을 벤젠 등 고독성 물질로써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개월"인 7종은 현행(6개월 이내)** 유지하되

◉ 그외 석면, 야간작업 등 주기가 **"12개월"인 유해인자와 소음, 분진 등 "24개월"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로** 변경

*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건강진단결과 인정기간 : 모두 6개월 이내 (별표23 구분 1.~6.유해인자)	· 건강진단결과 인정기간 : ❶ 6개월 이내(별표23 구분 1.~3.) ❷ 12개월 이내(별표23 구분 4.~6.)

■ **같은 근무기간('22.1월~'23.10.월)** 사업장 이동에 따른 석면노출근로자 검진횟수 비교

현 행

20개월간 총 4회 실시	
근무기간	배치건강진단
'22.1월 부산○○현장	실시
'22.8월 대전○○현장	실시
'23.3월 서울○○현장	실시
'23.10월 천안○○현장	실시

개 정

20개월간 총 2회 실시	
근무기간	배치건강진단
'22.1월 부산○○현장	실시
'22.8월 대전○○현장	면제
'23.3월 서울○○현장	실시
'23.10월 천안○○현장	면제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진영훈	연락처	044-202-8872

6 특수 및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현실화 (시행규칙 제209조 및 제211조)

근거 법령

◇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③(이하 생략)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시행규칙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④(이하 생략)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개정 배경

■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질 관리 목적으로** 해당 **직업환경전문의 1인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 규정상 배치전건강진단*의 경우 연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 **배치전건강진단**을 과도하게 실시하더라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연인원 제한에 따른 질 관리 실효성이 결여됨**

* **배치전건강진단**이란 근로자를 유해인자 업무에 배치하기 전 해당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직업환경전문의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특검이랑 동일)

■ 과거 구법(19.12.24.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전)의 경우 건강진단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 조항(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연인원에 대한 **행정해석을 건강진단 종류 구분없이 계산**토록 하였으나,

◉ **개정 이후**에는 법에서 이미 건강진단을 종류별로 조항을 구분함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연인원 계산은 **특수건강진단만으로 제한하여 해석**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특수건강진단 ② 배치전건강진단 ③ 수시건강진단,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이에,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경우 대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배치전건강진단을 인원제한 없이 과도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수단이 없어, 잦은 민원이 발생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도 이러한 건강진단 시장의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건강진단 질관리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

2 개정 내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을 포괄하여 집계하되**

◉ 현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인력수급 현황*과 특수건강진단기관 운영현황**, 실적 등 현실성을 고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자격 합격 현황: 37명('21년) → 35명('22년) → 33명('23년)

** ❶ 배치전건강진단은 보고의무가 없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연구결과(16년, 19년) 등에 따르면 대략 특수건강진단의 **약 16% ~ 21% 추정**
❷ 최근 2년간 정부비용지원사업(배치전・특수건강진단)에서 배치전건강진단은 평균 **32.4% 수준임** <'22년(28.9%), '23년.10.(35.9%)>
❸ 특수건강진단기관 약 255개소(23.10. 기준)에서 연간 특수건강진단을 2,281,990명('21년) 실시하고 있음

〈 의사 1인당 일반건강검진기관 수검 제한 Vs 특수건강진단기관 수검 제한 〉

일반건강검진(보건복지부)	특수・배치전건강진단(고용부)
▸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출장기준 **100명/일** (원내기준 25명/일)	※ 252일/년 = 월평균 근무일(21일)*12월 ▸ (現)특수건강진단 수검인원제한: 1만명/연 (일일환산: 10,000명/252일 = **약 40명/일**) ▸ (改)특수,배치전 수검자 13,000명(특수: 1만명) (일일환산: 13,000명/252일 = **약 52명/일**)
(1일 진료시간 적용 예) 수검자 1명 5분 X 100명 =500분 (8시간20분)	(1일 진료시간 적용 예) 수검자 1명 5분 X 52명 =260분 (4시간20분)

◉ 별도 추가 비용발생(의사 채용)없이도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사 1명당 연간 실시 인원제한 기준을 1만명에서 13천명**으로 **확대**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보고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現,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의사 1명당 연간 실시인원 수 제한은 특수건강진단 실시인원 1만명 미만	의사 1명당 연간 실시인원 수 제한은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인원 1만3천명 미만(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인원은 1만명을 초과할 수 없음)

* (改)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13,000명/(월평균 20.6일*12개월=247일/연)= 53명(명/일)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5. 1. 1. 부터 시행

■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

현 행	개 정 안
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진영훈	연락처	044-202-8872

7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 개선 (시행규칙 별표 24)

근거 법령

◇ **시행규칙 별표24**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4)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1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 개정 배경

■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지표 검사의 경우

◉ 작업 종료 후 10~15분 이내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검사와 제2차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1차검사항목**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

※ 매년 일산화탄소로 특수건강진다 실시인원은 약 10만명 수준임

**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근로자의 생체시료(혈액, 소변, 호기, 머리카락 등)로부터 유해물질의 대사산물 또는 생화학적변화산물 등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체내흡수 정도, 건강영향 가능성 등 노출정도를 파악하는 것

◉ 현실적으로 일산화탄소 노출작업 종료 후 검진기관 방문할 경우 검사시간(10~15분 이내)을 준수하기가 곤란

2 개정 내용

■ 일산화탄소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는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특정 시점에 채취하여야 하고,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검사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

* 생물학적노출기준값: 혈액 중 카복시헤모글로빈 3.5%, 호기 중 일산화탄소 40ppm을 노출지표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능한 신경행동학적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심혈관계의 운동 수용능력을 CO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하는 데 있음

◉ 제1차 검사항목에서 해당검사를 삭제하고, 임상검사 및 진찰에서 그 검사결과가 참고치를 벗어나거나, 심혈관계 및 신경계 이상징후 등이 있는 경우

◉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검사를 **1차에서 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 시행**

* 제1차검사항목은 필수항목이나, 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가 판단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일산화탄소 제1차 검사항목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일산화탄소 제2차 검사항목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3 시행 시기

(시행일) 2024. 7. 1.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1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개정안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1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 삭 제〉	(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진영훈	연락처	044-202-8872

8 제조등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 시 항목 변경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서식)

1 개정 배경

- 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 시 금지물질의 명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품명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금지물질 제조 등 허가신청 시 제품명과 금지물질을 같이 병기하도록 하고 있어 부처간 통일된 신청 체계 필요
 - 아울러, 신청항목 중 '사용물질의 양'이 제품의 양인지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의 양인지 구분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개정 내용

-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명이 아닌 유통되는 제품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 기재
- 사용물질의 양을 금지물질의 양이 아닌 사용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기재

현 행	개 정
•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 신청 시 금지물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함. • 금지물질의 사용양을 적도록 함.	•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 신청 시 유통되는 제품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함. • 금지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양을 기재하도록 함.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4. 7. 1.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승인신청서

※ 공지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제조금지 물질	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제조·사용기간 또는 수입일	제조기간	년 월 ~ 년 월			
		사용기간	년 월 ~ 년 월			
		수입일	년 월			
	사용물질의 양					
	제조 또는 사용 개요					
종사 근로자 수	제조(명)			사용(명)		
제조설비등	건물 개요	바닥면적				
		구조(바닥 포함)				
	제조설비 개요					
	사용설비 개요					
보관	대상 물질을 넣는 용기					
	대상 물질 보관 장소					
보호구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종류		재질		개수
	불침투성 보호장갑	종류		재질		개수
	그 밖의 보호구	종류		재질		개수
시험연구 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에 따라 []제조 []수입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서식 제목 중 제조·사용·수입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건물 개요란에는 제조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을 적습니다.
3. 구조(바닥 포함)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등의 구분과 바닥의 재질을 적습니다.
4. 제조설비 개요란에는 주요 제조설비를 적고, 주요 제조설비 등의 밀폐 상태 및 배관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드래프트 체임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5. 제조등금지물질을 넣는 용기란에는 용기의 재질과 용량을 적습니다.
6. 불침투성 보호앞치마란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란에는 해당 보호구의 재질과 개수를 적습니다.
7. 그 밖의 보호구란에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의 종류와 개수를 적습니다.
8. 참고사항란에는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실시기관명을 적되, 제조금지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승인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승인서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 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 노동청 (지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4. 6. 28.>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승인신청서

※ 공지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제조등 금지물질	금지물질 명칭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품명					
	제조・수입・사용의 목적					
	제조・사용기간 또는 수입일	제조기간	년	월 ~	년	월
		사용기간	년	월 ~	년	월
		수입일	년	월		
	제품의 양(g)					
	금지물질 함유량(%)					
종사 근로자 수	제조(명)			사용(명)		
제조설비등	건물 개요	바닥면적				
		구조(바닥 포함)				
	제조설비 개요					
	사용설비 개요					
보관	대상 물질을 넣는 용기					
	대상 물질 보관 장소					
보호구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종류		재질		개수
	불침투성 보호장갑	종류		재질		개수
	그 밖의 보호구	종류		재질		개수
시험연구 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에 따라 []제조 []수입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서식 제목 중 제조·사용·수입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제품의 양란에는 제조·사용 기간의 총량을 적습니다.
3. 건물 개요란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을 적습니다.
4. 구조(바닥 포함)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등의 구분과 바닥의 재질을 적습니다.
5. 제조설비 개요란에는 주요 제조설비를 적고, 주요 제조설비 등의 밀폐 상태 및 배관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드래프트 체임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6. 제조등금지물질을 넣는 용기란에는 용기의 재질과 용량을 적습니다.
7. 불침투성 보호앞치마란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란에는 해당 보호구의 재질과 개수를 적습니다.
8. 그 밖의 보호구란에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의 종류와 개수를 적습니다.
9. 참고사항란에는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실시기관명을 적되,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승인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시행	승인서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연락처	044-202-8871

9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 (시행규칙 별지 제91호 서식)

1 개정 배경

■ 현재 시행규칙은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 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변경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개정 내용

■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추가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 시 변경신청서만 제출	▪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 시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4. 7. 1.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9조(등록신청 등) ①·② (생 략)	제229조(등록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영역			
	시험합격	제 회		
사무소 (예정)	명칭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내용 및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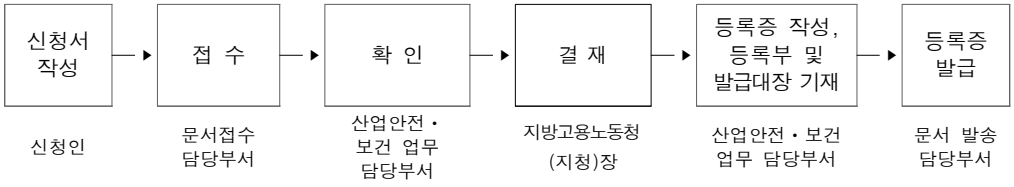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24. 6. 28.>

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영역			
	시험합격	제 회		
사무소 (예정)	명칭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내용 및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등록 []갱신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등록·갱신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변경 신청하는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원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부 및 발급대장 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부서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태	연락처	044-202-8814

10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 (시행규칙 별표 2)

1 개정 배경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업종 분류 재정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르고 있음

◉ 현재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24.7.1.부터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될 예정으로, 변경된 산업분류내용을 반영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개정할 필요

2 개정 내용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신설)은 '정보서비스업과 동일하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던 일부 산업활동[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 및 오디오물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으로 산업분류가 변경됨

◉ 다만,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의 운영실태, 인력구성 및 유해 위험요인 등이 ‘정보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보서비스업’에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추가·신설하여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산업분류가 변경된 업종의 법 적용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

* 현행 별표 2**에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제11차 소분류 기준)’을 신설·추가**

〈 ‘정보서비스업’과 ‘방송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기준 비교 〉

안전관리체 적용기준	정보서비스업	방송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규칙 별표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100인 이상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별표 2 ‘사업의 종류>	<별표 2 ‘사업의 종류>
<신 설>	4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5. 정보서비스업	5. 정보서비스업

3 시행 시기

(시행일) 2024.7.1.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제25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제2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
1. ~ 4. (생 략) 〈신 설〉 5. ~10.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5. ~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은경	연락처	044-202-8808

11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90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이 지정받는 경우와 다름

◉ 그러나, 현행 지정(변경)신청서·지정서 서식은 **지도사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아 전문기관 지정 시 해석상 혼란, 민원 발생**

⇒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과 **지도사 개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서식 개정 필요**

2 개정 내용

■ **법인 및 지도사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

◉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를 법인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사에 대한 **지정(변경)신청서·지정서 서식 추가**

* 현행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서 서식은 법인 등에 대해 사용하도록 제목 개정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지도사, 법인에 대해 동일한 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지정서 서식 사용	・지도사에 대한 별도 지정(변경) 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추가하여 법인과 구분

3 시행 시기

■ **(시행일)** 2024. 7. 1.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6조(안전관리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

현 행	개 정 안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 ---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신청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업무지역		
	사무소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지정신청하는 지도사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만 기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3.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제 호

() 지정서(산업안전 · 보건지도사)

성명		
사무소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사항	총 업무(지정) 한계 사업장 ()개소, 근로자 ()명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사업장 ()개소, 근로자 ()명	
	업무(지정) 지역	

※ 준수사항

1.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신청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업무지역		
	사무소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변경신청하는 지도사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만 기입합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검토	→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합리화 (안전보건규칙 제24조)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9호**에 따라 사업주는 **높이 7미터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 그러나 인명구조·설비보수 등을 위해 **장비를 등에 메고 이동**해야 하는 등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받이울이 오히려 안전한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

* ('21년 행안부 궤도 및 삭도시설 정부합동 안전점검결과) 궤도운송법에 따른 리프트 지주의 수직사다리의 경우 구조장비를 메고 상부로 접근함에 따라 등받이울이 안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한 등받이울 설치 제외 단서 규정 마련 필요

■ **미국 및 영국**의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서의 추락 예방**을 위해 등받이울 **대신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미국)** 높이 7.3m 이상의 고정식 사다리 설치 시 등받이울 대신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 등을 설치(등받이울을 설치한 기존 사다리는 '36년까지 적용 유예)
(영국) 높이 2.5m를 초과하는 수직각도 75도 이상의 고정 사다리는 등받이울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

◉ **한국산업표준**에는 기계설비에 대한 고정식 사다리의 추락방지조치로 **등받이울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등받이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용 보호 장비**로서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현행 규정의 정비** 필요

* KS B ISO 14122-4(기계 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제4부: 고정식 사다리)
KS G ISO 10333(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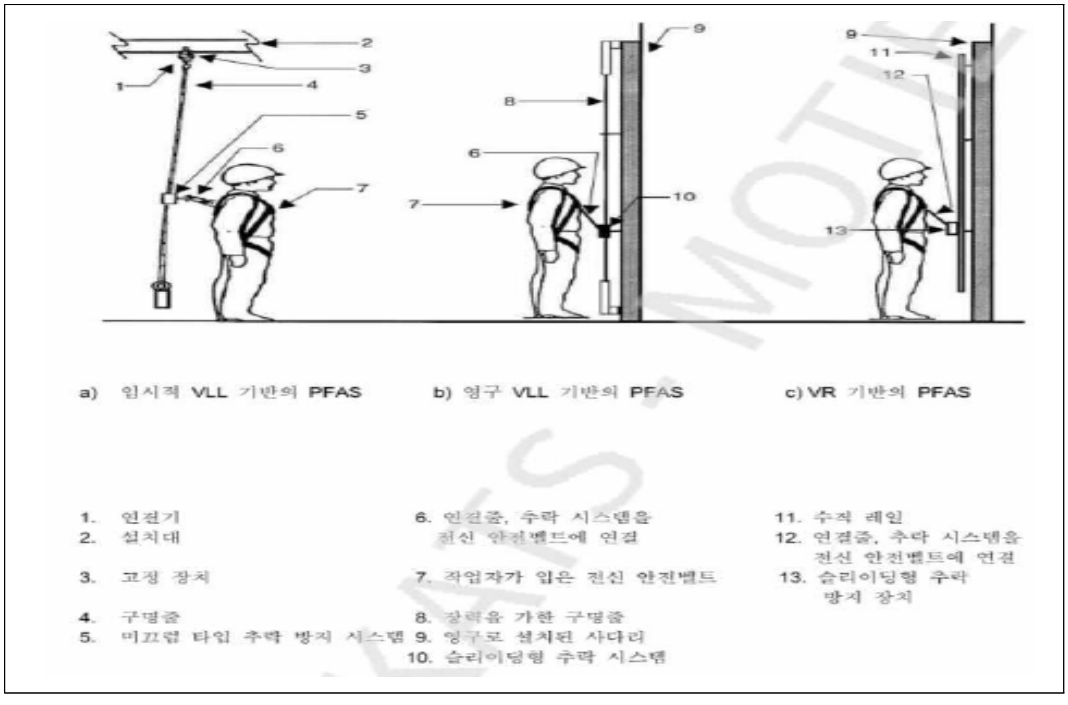
■ 이에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영구적으로 **고정된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등받이울 설치 의무 예외**를 규정

2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9호 단서 보완**

◉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아**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참고 : 고정식 사다리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 구성도(KS G ISO 10333-4) 〉



법령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시행 시기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 1.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중	연락처	044-202-8851

2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672조, 제673조)

1 개정 배경

■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배달종사자)에 대해서 사업주 등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차용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도록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32조①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 한편,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를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음**

■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를**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세분하고**,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를 이륜차용과 자전거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륜차용)**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용)**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 한편, 안전보건규칙은 이동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배달종사자에게 **이륜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

-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도 **"이륜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 발생**

⇨ 사업주 등이 배달종사자가 활용한 이동수단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규칙 개선 필요

2 개정 내용

■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승차용 안전모 규정 합리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개정)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10.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

현 행	개 정 안
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신 설〉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생 략)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② ----------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221조까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	1.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

현 행	개 정 안
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에 따른 안전모----------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1. ----------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상	연락처	044-202-8852

3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안전보건규칙 제42조)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발판 외에 **사다리 등 다른 도구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현장에서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등 작업(전기·통신공사, 아파트 보수 등)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안전보건규칙은 **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작업발판으로 사용 시의 안전기준은 없어

- **안전한 사용방법을 전제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19.3월)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음

■ **선진국**의 경우도 **사다리에서의 작업을 허용**하고 있고,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요구도 지속**되고 있어

*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 건의('19.7월), 행정안전부 안전제도 건의('22.11월)

◉ 현장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상황을 감안할 때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을 마련**할 필요

2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신설**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사용기준 주요 내용 > ▪ 고소작업대, 비계 등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용 ▪ 이동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①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시 준수사항 ①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등 넘어짐 방지조치 ② 최대사용하중 내에서 사용 ③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 ④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⑤ 안전모, 안전대(2미터 이상 작업 시) ⑥ 사용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 ③ (생 략)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현 행	개 정 안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4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 (안전보건규칙 제55조)

1 개정 배경

■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시 줄걸이로 사용하는 **'섬유로프'** 기준 外 **재료규정** 현행화

◉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에 사용하는 줄걸이는 '와이어로프', '강선'이 아닌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있고, '섬유로프' 사용에 관한 기준은 안전규칙 제63조에 별도로 규정('21.11월 개정)

◉ 이에, 달비계의 와이어로프·강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칙 제55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달비계의 작업발판 최대 적재하중 안전계수 관련 규정 등을 삭제

◉ 안전보건규칙 제55조제2항·제3항 삭제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생략) (생략)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삭제> <삭제>

3 시행 시기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정욱	연락처	044-202-8937

5 통나무 비계 기준 정비 (안전보건규칙 제71조)

1 개정 배경

■ 현재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관련 **규정**의 **정비(현행화)**

◉ 국내 현장에서 **'통나무 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강관비계'혹은 '시스템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 정비 필요**

2 개정 내용

■ 사문화된 규정인 '통나무 비계의 구조' 규정(안전보건규칙 제71조) 삭제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②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인 건축물·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삭제> <삭제>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절 통나무 비계	〈삭 제〉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1미터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비계 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네 군데 이상을 묶을 것	〈삭 제〉

현 행	개 정 안
4. 비계 기둥·띠장·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이나 그 밖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5.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 5.5미터 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터 이내로 할 것 ②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인 건축물·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정욱	연락처	044-202-8937

6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안전보건규칙 제87조)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기계의 회전 부위에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덮개·울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0년('13~'22)간 회전체 끼임 위험 기계**(5종*)로 인한 **사고사망자(92명) 중 덮개나 울이 설치되었으나, 개방된 채로 작업을 하다**가 회전날 등에 끼여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5.9%**(33명) **차지**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식품가공용 혼합기, 식품가공용 분쇄기 등

◉ 이에, **불가피**하게 덮개·울을 개방하고 작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위험요인에 맞는 **방호조치 형태를 사업장에서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할 필요

* 위험영역의 접근 필요성에 따라 움직이는 부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가드와 방호장치를 선택하고, 접근해야 하는 빈도가 증가하면 고정식 가드를 대체하는 보호조치(연동 장치, 감지식 방호장치 등)가 필요
↳ ISO 12100(Safety of Machinery –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 6.3(Safeguarding and complementary protective measures)

2 개정 내용

-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할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토록 규정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혼합기 등 회전기계 방호조치> ■ 혼합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혼합기 등 회전기계 방호조치>** ■ 혼합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덮개 설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❶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❷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❸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
■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하여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덮개 또는 울 등 설치	■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하여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덮개 또는 울 등 설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을 열어야 하는 경우 ❶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❷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❸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5.6.29.)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원동기 ·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87조(원동기 ·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주는 분쇄기 · 파쇄기 · 마쇄기 · 미분기 · 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 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
〈신 설〉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신 설〉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신 설〉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

현 행	개 정 안
	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 ---------- ---------- --------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
〈신 설〉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신 설〉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신 설〉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7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 (안전보건규칙 제92조)

1 개정 배경

■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등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토록 하고 있으나

◉ 현행 규정은 **운전정지 대상을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으로 하고 있어 교반기, 분쇄기 등 그 외 기계의 적용 여부에 **해석상 쟁점 발생**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은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전정지 대상 기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른 **운전정지 대상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명확히 규정**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 ---------- ---------- ----------. ---------- ---------- ---------- --- 그렇지 않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8 레버풀러 등 사용 관련 조문 정비 (안전보건규칙 제96조)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2항제8호에서 **레버풀러, 체인블록 사용** 시 달기 체인의 사용에 관해 안전보건규칙 **제167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안전보건규칙 **제167조**는 다시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복잡한 인용 방식**으로 인해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 **제7호와 제8호**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될 체인의 기준을 중복해서 규정**하고 있는 등 **이를 수정할 필요**

*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②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제167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2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조문 수정**

* 사용금지 대상 체인 기준 중 중복 기준 일원화 및 인용조문 직접 규정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생 략)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체인과 혹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혹은 ---------- 마모 ----------
8. 제167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현 행	개 정 안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위치 위탈 시 조치 명확화 (안전보건규칙 제99조)

1 개정 배경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 내 '이탈'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와 차량이 이탈**하는 경우에 **함께 사용하고 있어 해석상 쟁점 발생 가능**

- 해당 기계가 **외력 등으로** 인하여 **원래 위치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용어로 명확히 할 필요**

2 개정 내용

■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어를 **'이탈' 대신 '이동'**으로 대체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생 략) ② (생 략)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 1. (현행과 같음)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10 식품가공용 볼 리프트 방호조치 기준 마련 (안전보건규칙 제1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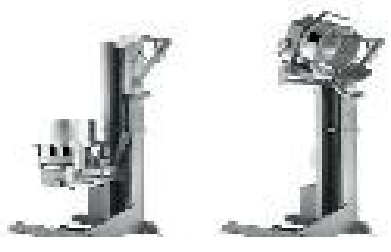
1 개정 배경

■ 최근 빵 등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밀가루 등이 반죽된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이하 "볼 리프트"라 한다) 인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하강하는 리프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에서는 **식품을 분쇄하는 기계**(분쇄기 등)의 **작동 부분에** 근로자의 손 등 신체가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 이동하는 용기나 리프트가 움직이는 부위 등 끼일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 이에, **볼 리프트**에 근로자가 **끼이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 규정을 마련**할 필요

볼 리프트(예시)	국제기준(예)
	EN 13288(Food processing machinery – Bowl lifting and tilting machines – Safety and hygiene requirements) ※ 볼 이동경로 등 위험영역에 필요한 비상정지장치, 고정식 가드, 가동유지장치, 센서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규정

2 개정 내용

■ **볼 리프트 사용 중** 근로자의 신체가 끼이는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 ❶**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❷**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❸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볼 리프트의 안전에 관한 유럽표준에서도 사용 시 끼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가드, 비상정지장치 등 규정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신 설>	■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할 것 → ❶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❷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❸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근로자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운반기계가 작동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4.12.29.)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생 략) 〈신 설〉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기계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근로자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운반기계가 작동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11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 (안전보건규칙 제147조)

1 개정 배경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방호장치, 해지장치 사용 등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사용기준은 부재**

◉ 작업 편의상 **아웃트리거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큼**

* '19년 이후 이동식 크레인 사용 중 넘어짐으로 인해 4명 사망

2 개정 내용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해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를 준수**하도록 규정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아웃트리거 사용 기준 부재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자의 사용설명서 준수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 ---------- 그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그 ---------- ---------- ---------- ---------- ----------.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12 구내운반차 안전장치 강화 (안전보건규칙 제184조)

1 개정 배경

■ **구내운반차** 사용 시 **충돌 방지**를 위해 **제동장치, 전조등, 후미등**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가 없어 **충돌 사고 위험성 존재**





2 개정 내용

■ 구내운반차 사용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를 **의무화**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구내운반차 사용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기준 부재	▪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5.6.29.)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4조(제동장치 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84조(제동장치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14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1 개정 배경

■ **화학설비*의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작동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안전보건규칙 제261조)**

* ① 보일러 ② 압력용기 ③ 정변위 압축기 ④ 정변위 펌프, ⑤ 배관, ⑥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 안전밸브가 설정된 압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압력방출시험)

< 현행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되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P등급): **4년마다 1회 이상**

■ 화학설비 정상운영 중 **검사**를 위해 **안전밸브 탈착**시 **누설, 고소작업** 등의 **위험**이 **증가**

◉ **화학공장 대정비(TA)* 기간을 고려**하여 **작동검사 주기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 **제기****

*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대정비(Turn Around, TA) 보수 주기 : **1년 ~ 4년**(공정별 상이)

** 화학업계 규제혁신 건의과제('22.8.26), 국조실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 ('22.10.6, '23.4.17)

〈 **안전밸브 검사방법** 〉

			
① 작업준비 : 고소지역 비계설치	② 설비로부터의 안전밸브 분리 : 고소, 중장비(Crane) 작업, Chemical 누출 위험성	③ 안전밸브 검사실시	④ 안전밸브 재설치 : 고소, 중장비(Crane) 작업, Chemical 누출 위험성

2 개정 내용

■ 안전밸브 **사고현황 분석, 현장**의 목소리,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화**

* (현행) 1년 또는 2년 → (개정) 2년 또는 3년

◉ **(사고현황)** '96년~'20년간 중대산업사고 227건 중 **안전밸브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3건**으로 **'08년 이후는 없음**

* 그 외 9건의 안전밸브 관련 사고 있으나 안전밸브 미설치, 배출물질 부적정 처리 등에 기인

◉ **(현장의 목소리)** 화학설비 정상운영 중 **안전밸브 탈착으로 화학물질 누출위험 및 고소작업 위험** 등으로 **실시 곤란**한 경우 다수

◉ **(국내·외 사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국내 유사제도는 2년에 1회** 검사 토록 하고 있고, **미국·영국 등 해외는 2년~10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작동검사**토록 함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용기는 2년마다 1회 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년마다 1회 이상
** ▲ 일본(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2년마다 1회)
▲ 미국 API 규정(통상 5년, 부식없는 경우 10년 권고)
▲ 영국(부식이 없는 경우 최대 6년)

◉ **(전문가 의견)** '21년, '22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의 연장** 또는 **대정비기간**(TA)과 일치방안 제안

* 『안전밸브의 설치대상 및 작동시험 주기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22.5월~11월)
『화재·폭발 안전기준의 규제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21.5월~11월)

현 행	개 정
◈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1년 또는 2년** 1. 안전밸브만 설치시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2년 또는 3년** 1. 안전밸브만 설치시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 오타 수정(제261조 제1항 제3호, 토출축 → 토출측)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3. ----------토출측----------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③ ----------. ----------

현 행	개 정 안
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1. ---------- 2년마다 ---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 3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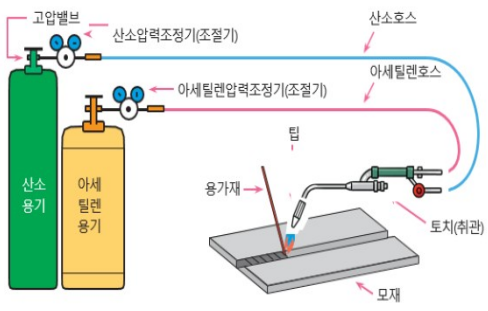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신백우	연락처	044-202-8969

15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 소화설비 명확화 (안전보건규칙 제290조·제295조)

1 개정 배경

■ 현행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장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 다만, '적당한 소화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아세틸렌 용접장치(예시)	가스집합장치(예시)
	
산소와 아세틸렌가스를 혼합하여 연소시키면 열이 발생하며 이를 용접·용단·가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	용접용 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가스 용기를 다수 결합해서 배관에 사용하는 장치

2 개정 내용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설치장소에 갖춰야하는 '적당한 소화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이동형이므로 소화기를 한 대 이상 갖추도록 명시, 가스집합용접장치는 고정형으므로 수규자가 사업장 현황에 맞는 소방시설법상 '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소화설비'를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로 구분

■ **개정 전후 변경 사항**

현 행	개 정
<내용 모호>	**< 규정의 명확화>**
▪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_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 가스집합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 가스집합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 (생 략)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 1. ~ 4. (현행과 같음)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현행과 같음)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8.·9. (생 략)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 1. ~ 6. (현행과 같음)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8.·9.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신백우	연락처	044-202-8969

붙 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16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조치기준 삭제 (안전보건규칙 제477조~제485조)

1 개정 배경

■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은 현재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

* '07.1월, 제조·사용 금지(일부 군수용·화학설비용만 허용) → '15.4월 전면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보건조치 규정에 남아 있어 정비 필요

* '07년에 이미 석면 중 일부 종류(청석면, 갈석면)를 제조·사용 금지하면서 금지물질 규정을 적용해 왔고, '15년에는 허가대상유해물질로 남아 있던 백석면도 금지하여 **현 규정은 적용이 불가한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임**

2 개정 내용

■ 석면의 제조·사용 관련 조치기준(제477조~제485조)은 삭제하고

◉ 제3편 제3장 금지물질 규정(제498조~제511조)으로 규율

현 행	개 정
· 석면 제조·사용 작업 시 조치기준 (제477조~제485조)	< 삭 제 >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6절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격리) (생략)	제477조 〈삭 제〉
제478조(바닥) (생략)	제478조 〈삭 제〉
제479조(밀폐 등) ①~② (생략)	제479조 〈삭 제〉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② (생략)	제480조 〈삭 제〉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①~② (생략)	제481조 〈삭 제〉
제482조(작업수칙) (생략)	제482조 〈삭 제〉
제483조(작업복 관리) ①~③ (생략)	제483조 〈삭 제〉
제484조(보관용기) (생략)	제484조 〈삭 제〉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② (생략)	제485조 〈삭 제〉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연락처	044-202-8871

17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예방적 기능 복원 (안전보건규칙 제517조)

근거 법령

(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정의)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 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1 개정 배경

■ **청력보존프로그램**(Hearing Conservation Program)은 개념적으로는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 예방관리 활동 프로그램이나

* 노출 평가, 공학적 대책,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교육, 청력검사 및 기록·관리

◉ 現 안전보건규칙 상 **청력보존프로그램은**

- 그 내용에 **'소음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만 포함**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공학적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제512조 정의)
- 수립·시행 대상은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90dB) 초과** 또는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 사업장**으로 하고 있어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 수단으로 잘못 운영 중** (제517조 시행대상)

※ 소음성 난청 관련 산재신청 건수: ('18년) 3,294건 → ('19년) 4,534건 → ('20년) 9,090건 → ('21년) 9,840건 → ('22년) 12,590건 → ('23.8.월) 11,315건

■ 이와 관련, **외국**은 **노출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부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운영**토록 하고 있음

◈ **(미국)** 노출기준은 90dB이나 **청력보존프로그램은 85dB부터 운영**
◈ **(영국)** 노출기준은 87dB이나 **청력보존프로그램은 85dB부터 운영**

2 개정 내용

■ **(제512조 개정)**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정의 중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수립' → '소음 노출수준에 따른 공학적 대책'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내용		
소음 노출 평가		(좌동)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	**소음 노출수준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좌동)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좌동)
정기적 청력검사		(좌동)
기록·관리 사항 등		(좌동)

⇒ 예방적 차원에서 소음 노출수준을 고려해 공학적 대책을 수립

■ **(제517조 개정)**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기존 노출기준(90dB) 초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음작업(85dB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대상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의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나.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 나.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 제512조(정의) 제1호 "소음작업", 제2호 강렬한 소음작업, 제3호 충격소음작업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	제51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현 행	개 정 안
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욱	연락처	044-202-8873

18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 (안전보건규칙 제519조, 제520조)

근거 법령

◇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 **제520조(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를 사업장에 비치만 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용방법을 이해하며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용방법을 주지**하도록 함

2 개정 내용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문을 삭제**하고

◉ 사업주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주지' 시키도록 의무 부여**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근로자가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비치	■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그에 따른 유해성, 장해 예방법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

3 시행 시기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2. (생 략) 3.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4. (생 략) 제520조(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 1.·2. (현행과 같음) 3. 진동 기계·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현행과 같음) 〈삭 제〉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욱	연락처	044-202-8873

19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 (안전보건규칙 제547조)

근거 법령

◇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정 배경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호스를 통해 공급받으면서 하는 잠수작업**으로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잠수작업자 1명**인 경우에도 **수면 위에서 공급**되는 **압축공기 공급관리와 작업시간, 감압 및 부상 속도 조절 등의 작업감독을 수행하는 사람이** 1명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제1항에 **「잠수작업자 2명당 감시인을 1명씩 배치」**라고 규정하여 **잠수작업자가 1명이면 감시인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

2 개정 내용

■ 감시인 배치 기준 명확화

◉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자 보호조치 강화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잠수작업자 2명당 감시인을 1명씩 배치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을 배치하되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배치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감시인을 1명 배치하고, 잠수작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현 행	개 정 안
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는 감시인 1명당 잠수작업자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신 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한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현 행	개 정 안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4항 각 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⑥ 제3항 ----------. ----------.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욱	연락처	044-202-8873

20 병명 현행화(인간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안전보건규칙 제592조)

근거 법령

◇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 **[별표 15] 혈액노출 후 추적관리**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정의) 제1호에는 혈액매개 감염병 중의 하나를 **'인간면역결핍증',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 **감염병예방법**(제2조제4호)에서는 이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정의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2조제1호) 에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개정 내용

■ **용어 변경**

◉ 인간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인간면역결핍증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제598조제2항 관련)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제598조제2항 관련)

현 행

1. (생 략)
2.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사항

노출 형태 / 혈액의 감염상태	침습적 노출		점막 및 피부노출	
	심한 노출[5]	가벼운 노출[6]	다량 노출[7]	소량 노출[8]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1급[1]	확장 3제 예방요법[9]		확장 3제 예방요법	기본 2제 예방요법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2급[2]	확장 3제 예방요법	기본 2제 예방요법	기본 2제 예방요법[10]	
혈액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상태 모름[3]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위험요인이 있으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노출된 혈액을 확인할 수 없음[4]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음성	예방요법 필요 없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
(제598조제2항 관련)

개 정 안

1. (생 략)
2.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사항

노출 형태 / 혈액의 감염상태	침습적 노출		점막 및 피부노출	
	심한 노출[5]	가벼운 노출[6]	다량 노출[7]	소량 노출[8]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1급[1]	확장 3제 예방요법[9]		확장 3제 예방요법	기본 2제 예방요법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2급[2]	확장 3제 예방요법	기본 2제 예방요법	기본 2제 예방요법[10]	
혈액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상태 모름[3]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위험요인이 있으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노출된 혈액을 확인할 수 없음[4]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음성	예방요법 필요 없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
(제598조제2항 관련)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table>
<tr><th>감염병</th><th>추적관리 내용 및 시기</th></tr>
<tr><td>B형간염 바이러스</td><td>HBsAg: 노출 후 3개월, 6개월</td></tr>
<tr><td>C형간염 바이러스</td><td>anti HCV RNA: 4~6주
anti HCV: 4~6개월</td></tr>
<tr><td>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td><td>anti HIV: 6주, 12주, 6개월</td></tr>
</table>
비고
1. ~ 2. (생 략)
3. anti HIV: 인간면역결핍항체 검사
</td><td>
<table>
<tr><th>감염병</th><th>추적관리 내용 및 시기</th></tr>
<tr><td>B형간염 바이러스</td><td>HBsAg: 노출 후 3개월, 6개월</td></tr>
<tr><td>C형간염 바이러스</td><td>anti HCV RNA: 4~6주
anti HCV: 4~6개월</td></tr>
<tr><td>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td><td>anti HIV: 6주, 12주, 6개월</td></tr>
</table>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3. ----- : 인체면역결핍항체 ---
</td></tr>
</table>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진영훈	연락처	044-202-8872

21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목적 명확화 및 측정자격자 확대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근거 법령

(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생략)

1 개정 배경

■ 現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가 목적**이나

◉ 마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 목적성 퇴색

⇒ 목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측정의 의무와 측정자의 요건을 구분할 필요

■ 아울러, 산소농도 등의 측정이 상당한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특정 직책, 전문자격(기관) 또는 공단교육 이수자(3h)만으로 제한 → **오히려 적시에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음**
▸**수시·간헐적** 밀폐공간 작업의 특성상 **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측정·평가는 실효성 낮음**
▸**'21.5.28. 안전보건공단 교육이수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자격자로 새로 추가** 하였으나 업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이와 관련, **미국, 영국**은 측정자의 자격을 따로 두지 않고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밀폐공간 내 공기를 모니터링 할 사람을 지정(Designate)하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

* 미국 OSHA 1910.146(d)(8), 1910.146(g)(1)

※ 관련 가이드에서는 측정장비를 조작하는 능력과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수행토록 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 공기 테스트와 관련하여 실무 경험이 있고, 관련 오염물질 기준을 알고 있는 자가 수행해야 하며, 결과 해석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 ACOP(Approved Code of Practice, 인증실행규범)

⇒ 형식적 요건(직책, 기관 등)이 아닌 실질적 요건(유해가스 농도측정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2 개정 내용

■ **現 제619조의2를 ▲측정의 의무와 ▲측정자의 요건**으로 구분

◉ **제1항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해야 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 **제2항에서는** 기존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기능적 요건을 갖춘 사람, 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하되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육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하도록 해야 함 1. 관리감독자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작업환경측정기관 6. 안전보건공단 관련 교육이수자 ② 제1항의 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해야 함 ② 이때의 측정·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평가하도록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육해야 함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과 조작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측정 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판단 ③ (현 2항과 같음)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연락처	044-202-8871

23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 합리화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1 개정 배경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이하 '수시 유해요인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승인자수):** ('18) 6,715명 → ('19) 9,440명 → ('20) 9,601명 → ('21) 11,868명 → ('22) 11,945명
↳ 노동시장의 고령화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확대로 근골격계질환자 수 증가 추세

** **(수시 유해요인조사 대상)**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사업주는 조사의무가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신규 작업·설비 도입 또는 작업공정 등 변화**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는 **근로자 작업과정 확인이 필요**하여

* 질병 등으로 인한 산재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사안에 따라 수개월 소요) 후 우편 통지

- 수시 유해요인조사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조사 착수 전 최소한의 준비·확인 기간도 보장되지 않아 **조사가 부실하게 실시될 우려**

◉ 또한, **최근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조치 과정**임에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의 사유로** 해당 작업에 대한 **반복적인 유해요인 조사는 실효성이 없어 개선 필요**

* (최초) 신설 사업장의 경우 1년 이내 조사, (정기) 매 3년 마다 조사, (수시) 사유 발생시 조사

** 연간 1건 이상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사업장 수('22년 기준) : 8,853개소
↳ 1건(8,073개소), 2건(498개소), 3건(126개소), 4건(40개소), 5건 이상(116개소)

2 개정 내용

■ **(적정 조사시기 부여)**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승인 시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인 **'1개월 이내'**로 일치(통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조사대상 합리화) 유해요인 조사**는 **부담작업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신체적 부담을 낮추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 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수시 유해요인 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 반복적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시기)**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 조사	• **(시기)**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합리화
• **(대상)**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등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대상)**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등 사유 발생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최초, 정기, 수시)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 수시 유해요인 조사 생략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생 략)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골격계질환

현 행	개 정 안
	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1. ----------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연락처	044-202-8892

24 조문제목 구체화 (작업조건 → 작업과 휴식시간의 배분) (안전보건규칙 제664조)

1 개정 배경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작업조건)의 조문 내용**은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작업 및 휴식시간 배분 관련으로 **조문제목과 상이함**

2 개정 내용

■ 조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 변경**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조문제목이 '작업조건'으로 본문 내용 유추가 어려움	• 조문제목을 '작업과 휴식시간의 배분' 변경하여 내용 예측이 용이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4조(작업조건) (생 략)	제664조(작업과 휴식시간의 배분) (생 략)

담당부서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연락처	044-202-8892

25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이행규정 혼선 해소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제665조, 제666조)

1 개정 배경

■ 현행 규정에서는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관련 보건조치 규정***과 주로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조치 규정**** 모두 **'중량물'로 동일 용어 표기**

* (보건조치 규정) 제3편 제12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 제663조(중량물의 제한)에서 '중량물 작업'에 대해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규정

** (안전조치 규정) 제38조(작업계획서),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신호), 제2편 제5장(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2장 제3절(제663조~제666조)의 **'중량물*'** 규정으로 인한 **안전조치 관련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 및 작업지휘자 지정(제39조) 등의 **이행조치 대상과 혼란*** 해소 필요**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표시 및 보조도구 활용 규정

** 제38조(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작업시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계획서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5킬로그램 이상의 도구 또는 물건 등을 취급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다수

2 개정 내용

■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중량물 작업과** 주로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중량물' **용어 수정**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관련 규정 및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관련 규정 모두 '중량물'로 표기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관련 규정(제3편 제12장 제3절)에서의 '중량물 작업'은 '인력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임을 알 수 있게 표기

3 시행 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중량물을 인력----------

현 행	개 정 안
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해야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중량물을 인력으로 ---------- 해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제666조(작업자세 등) ---------- 중량물을 인력으로 ---------- 등 근로자에게 ----------.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절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생 략)	제663조(무거운 물건의 제한) (현행과 같음)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	제666조(작업자세 등) ----------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

현 행	개 정 안
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

담당부서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연락처	044-202-8892